유럽 산업가속화법(IAA)의 산업·정책적 함의[1)]

EU 집행위원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 유인책에 대응해 탄소중립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탈탄소 기반 산업 성장'으로 전환하여, 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 가속화

* Inflation Reduction Act

-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와 유럽 제조업 경쟁력 약화)** 1991년 대비 EU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산업 기반이 취약해졌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분업 체계 심화로 유럽 제조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
- **(미국 IRA 영향)** IRA 등 자국 중심의 파격적인 산업 보조금 정책은 유럽 내 첨단기술 기업과 핵심 기술의 '북미로의 이탈(Exodus)'이라는 우려를 심화시켰으며,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입법 필요성 증가
- **(탄소중립 정책 한계 극복)** 기존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청청산업딜 등 규제와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창출 방안과 행정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현장 밀착형 통합 입법 제시

산업가속화법(IAA*)은 3대 전략산업과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제품 및 유럽 원산지(Union origin) 기준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 요건을 구체화 및 강화하여 'Made in EU' 확대에 주안점

* IAA : Industrial Acceleration Act /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대상 산업)** 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초소재 기반의 에너지 집약 산업, ② 배터리, 태양광, 풍력, 열펌프 등 넷제로 관련 산업, ③ 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 산업분야(또는 신흥 전략산업)
- **(주요 전략)** ① 인허가 절차 간소화, ② 공공부문을 활용한 시장수요 창출, ③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요건 강화, ④ 산업 가속화 지역(Acceleration Areas) 지정
- **(단계별 정책 개입)** 정책 개입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자율규제 중심의 낮은 단계(PO1)부터 전면적 강제성을 띄는 높은 단계(PO3)까지 목표 및 시장 확산에 따른 정책 개입 수준 조절

1)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이헌구 수석전문위원(janelee@osp.re.kr)
본 고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1 유럽 산업가속화법(IAA) 제안 배경

가. 유럽의 제조 경쟁력 저하와 미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 효과

2026년 3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가속화법 제안을 통해, 특정 산업에서 유럽 제조 경쟁력 확보 및 탈탄소 가속화를 위한 기존 관련 규정의 포괄적 개정과 구체화 방안 발표[2)]

- 유럽은 현재, 총 GDP 가운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1991년 28.8%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유럽의 제조 부가가치 하락은 중국의 WTO 가입(2001년)으로 인한 '글로벌 분업 체계' 형성 및 확산과 높은 연관성
  - 2000년대부터 유럽 주요 제조기업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추진
  - 이 과정에서 유럽 내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고용 비중이 줄고, 유럽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또한 감소

〈 유럽 총 GDP 대비 제조 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 〉

구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제조부문 부가가치 비중 (%)	**유럽**	**15.3**	**15.2**	**15.1**	**14.9**	**14.5**	**14.7**	**14.9**	**14.8**	**14.3**
	미국	11.2	11.3	11.3	11.1	10.6	10.7	-	-	-
	일본	20.3	20.4	20.6	20.2	20.1	20.8	19.8	20.6	-
	중국	27.5	27.6	27.3	26.3	25.7	27	26.4	25.5	24.9

출처 : Data from databas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Last Updated: 02/24/2026)

- 중국의 제조업 부상 및 공급망 집중을 예의 주시하던 미국은 트럼프 1기('17~'21)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제조의 중국 집중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바이든 행정부('21~'25)가 국가 주도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일련의 산업정책* 발표
    * IRA, CHIPS and Science ACT 등
  - 미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보조금 공여, 세금 면제, 대출, 보증 등 다양한 산업 유인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단기에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자국 내 유치 효과를 유발하여, 자국 제조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일정 수준 기여

2)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accelerating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참조

〈 미국의 경제 안보 및 산업 공급망 정책 주요 내용 〉

법안	주요 지원방안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22.8)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역량 제고에 2,800억 달러(약 365조 원) 지원 •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기초과학 R&D,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 지원 • 반도체·AI를 포함한 10대 핵심 기술 R&D를 위해 국립과학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약 105조 원) 별도 확보 •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 제고를 위한 「반도체 지원법('21)」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 원) 확보 • 「반도체 촉진법('21)」을 포함하여 시설·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22.8)	•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에 10년간 3,690억 달러(약 486조 원) 지원 •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및 청정전기 생산시설, 첨단에너지 프로젝트, 첨단제조 분야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기차(HEV, PHEV, EV, FCEV 등) 미국 내 생산 보조금 지원(생산비용의 50%)

출처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22.8, 산업연구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과 시사점('24.3, 에너지경제연구원)

〈 CHIPS & Science ACT 및 IRA 주요 정책 효과 〉

법안	산업정책적 효과와 한계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22.8)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strategic industrial policy)으로서 미국 내 첨단 제조 기반 재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인으로 작용 – (투자 유인) 인텔(Intel),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Micron) 등 대규모 팹 건설 등 생산 시설(Fab) 건설 및 자본 지출(Capex) 촉진 – (고용 창출) 약 93,000개(임시) 및 43,000개(정규) 일자리 창출 – (한계)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20% 달성을 위해서는 높은 제조 원가와 인력난을 탈피할 근본적 방안 필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22.8)	• 법 시행 후 단 6개월('22.8~'23.1) 만에 약 900억 달러 투자가 유치되고, 10만 개 이상의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 • 투자가 공화당 지역(남부 '배터리 벨트')에 3,370억 달러 투자 등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경제적 수혜 확산 • 미국 내 대규모 투자로 청정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같은 차세대 청정기술 비용을 낮추어 기술 곡선 변화를 촉발

출처 : Industrial Policy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25.1,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A year after the IRA, industrial policy has gone global. Now what? ('23.8, Atlantic Council)

유럽 또한 중국 등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를 탈피하는 한편, 미국의 거대한 보조금에 의한 역내 기업들의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경제 안보 및 산업 공급망 조치 공표[3)]

○ 미국의 IRA 발표 후, 유럽은 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럽만의 산업정책 마련에 고심

- IRA의 3,690억 달러라는 막대한 보조금은 전 세계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유럽 역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3) The IRA and European industrial policy ('23.3, Social Europe, https://www.socialeurope.eu/) 참조

* 폭스바겐이 동유럽 배터리 공장 건설 대신 미국 투자를 검토하는 등, BMW, Enel 등 유럽 기업의 미국으로 투자와 이전은 유럽 내 일자리 상실이라는 위기감 고조

-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미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시장 개입주의로의 회귀로 간주

※ 나아가,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아동 보육 시설 제공, 자사주 매입 금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장려 등 사회 정책과 산업정책의 통합은 거대한 사상적 변화로 인식

○ 미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녹색 전환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며 공급망이 유럽 중심으로 구축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모델 모색

- 유럽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과 '국가 보조금 금지' 원칙을 고수해 왔기에 미국의 개입주의적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 증가

- EU GDP의 15%를 차지하는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 기업의 녹색 전환 투자를 독려하는 '기업 정책' 확대 및 보조금을 조건으로 임금 수준, 노동 조건, 기후 목표 달성 등 사회적 목적 달성을 동시에 추구

나. 일련의 탄소중립 중심 정책을 계승하여 탈탄소 중심 산업정책으로 구체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강력함이 입증됨에 따라 유럽 내 위기감은 고조되었으며, 이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23.9) 및 산업가속화법(IAA, '26.3) 제안에 영향

○ 기존 'Fit for 55[4]' 등 탄소 가격제 중심의 정책 패키지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산업법의 신속 인허가 규정을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탈탄소화 프로젝트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IRA 방식의 직접 개입 강화

〈 유럽의 경제 안보 및 산업 공급망 강화 조치 〉

발표 및 시행	산업정책 입법안 및 조치
2023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GDIP)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중점 •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inerals Act : CRMA) • **탄소중립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 NZIA) •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등
2024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등
2025	• 유럽 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 **청정 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탈탄소 강조
2026	• **유럽 산업가속화법**(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등

출처 : 미국의 2022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김&장, '22.9.15),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8),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안보 정책(동아시아연구원, '24.3)

4) EU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편 및 신규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EU Fit for 55 패키지와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1.9, 에너지경제연구원) 참조

(Fit for 55)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실현을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증가를 통한 탄소 감축, 탄소배출 규제 강화 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신규 제정하는 등 포괄적 탄소중립 규정 제시

*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3.5 발효)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이 EU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탄소량에 대해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 탄소 배출량이 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에 대해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부과

(그린딜 산업계획[5]) 미국 IRA 등 주요국들의 그린 전환 산업과 기술 선점 정책 경쟁에 영향을 받아 유럽의 산업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Fit for 55'를 바탕으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입법

- **탄소중립산업법**[6] 또한 IRA 보조금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EU 시장점유율 저하 및 EU 그린 전환 산업과 기술의 유출에 대응하는 조치
  - 태양광 발전·태양열, 육·해상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지열, 수소 연료전지, 탄소포집저장(CCUS) 등 8개 탄소중립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프로젝트(Net-zero Strategic Project)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 부지 건설, 설계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행정기간 축소 및 절차 간소화 등

(청정 산업딜[7]) '25년 2월 발표된 정책 패키지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중점을 둔 '그린딜 산업계획' 연장선에서 탈탄소와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6대 전략 방향(규제 개선, 단일시장, 일자리 등) 및 인센티브 제시

- 저비용 에너지(Affordable Energy) 보급; 청정에너지 및 전기화 촉진, 연계를 통한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 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저감
- 청정제품 수요진작(boosting demand for clean products); EU 청정제품 시장에서 역내 생산품의 비율을 40%까지 확대
  - IAA는 '청정 산업딜' 내 '청정제품 수요진작'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저탄소 및 유럽산 기술·제품 수요 진작을 위한 제품기준 구체화 예정

---

5)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3호('23.2, 에너지경제연구원),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3.2, 대외경제연구원) 참조

6)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주요내용과 시사점(IIT Trade Brief, '23.3,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내용('23.3,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참조

7)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EU 청정산업딜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25.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참조

〈 EU산 청정제품 수요진작을 위한 IAA 제안(예시) 〉

- 핵심 전략 분야(에너지, 넷제로, 자동차 등)의 공공 조달 및 공공 지원 체계에 'Made in EU' 및 저탄소 요건 도입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점유한 비EU 국가 기업이 1억 유로 이상 투자 시 투자 요건* 구체화
  * 고품질 일자리 창출 계획 제시, 현지 부품 사용 요건 준수 등
- 공공 조달 프레임워크 구축 및 유럽 우선주의 기준 강화 등

출처 : Clean Industrial Deal ('25.2, EU 집행위원회)

- 청정전환 지원(Financing the clean transition) : 4.5억 유로 R&D 지원, '청정 산업딜' 전용 보조금 마련, 청정기술, 모빌리티 및 폐기물 감축 분야에 500억 유로 투자
- 자원순환 및 접근성(Circularity and access to materials) : 역내 핵심 원자재 수요 통합 관리, 순환 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26) 발표
- 글로벌 수준의 정책 추진(Acting on a global scale) : 탄소국경조정제도 강화, 글로벌 기후·에너지 비전 주도, 청정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출범
- 인재 양성 및 일자리(Skills and quality jobs) : 기술연합(Union of Skills) 설립,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9,000만 유로 지원

2 유럽 산업가속화법(IAA) 주요 내용(3대 전략산업·4대 전략방향 중심)

(개요) 탄소중립산업법·청청산업딜을 구체화 및 심화한 입법으로 볼 수 있으며 3대 전략산업 및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유럽 원산지 및 저탄소 적용을 강화[8] 하여 'Made in EU' 촉진

-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의 GDP 비중을 20%로 회복하고, 기후 전환을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집약적 산업, 넷제로 기술, 자동차 밸류 체인 전반을 집중 지원(또는 보호) 대상으로 설정

〈 3대 집중 지원 전략산업 〉

구분	IAA 적용 및 규제* 대상 산업
에너지 집약형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고무, 플라스틱, 화학, 코크스, 석유 및 제지
넷제로(Net-Zero)	•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풍력, 수소, 바이오가스, 탄소 포집, 원자력 및 수력
자동차	• 완성차 및 부품 가치사슬 전반

* 유럽 원산지 표기, 저탄소, 'Made in EU' 등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26.3, EU 집행위원회)

8) Proposed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Aims to Shore Up Declining EU Manufacturing Sector ('26.3, Crowell & Moring LLP Client Alert, https://www.crowell.com/) 참조

○ 청정 경제로의 전환을 탈탄소화 달성과 제조업 성장으로 전략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수요 창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요건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산업 가속화 구역 지정 등 4대 전략 방향 제시

〈 유럽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전략방향 〉

4대 전략방향	주요 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행정 디지털화·통합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및 창구 단일화 및 유럽 비즈니스 지갑 구축, "1개 프로젝트당 1회 제출" 등 원스톱 서비스로 단일 인허가 절차 도입
공공부문을 활용한 시장수요 창출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및 넷제로(Net-zero)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 등 공공부문이 탈탄소 및 탄소 저감 제품 구매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요건 강화	•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및 핵심 소재 분야 외국인 투자 촉진(1억 유로 이상 등) • 투자 요건으로 EU 내 노동자 50% 이상 고용 의무화 등 현지조달, 소유권 구조, 기술 이전, R&D 등 요건 구체화 및 강화
산업 가속화 지역 지정	•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산업 가속화 지역' 조성으로 신규 투자 촉진 및 탈탄소화 지원 • 지역단위 인허가(Area-wide permit) 및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등 행정특례 도입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26.3, EU 집행위원회)

(인허가 절차 간소화[9]) '디지털 원스톱 샵(Digital One-stop Shop)'을 통한 인허가 창구 단일화 및 탄소중립산업법 신속 인허가 확대 적용 등 적극적이고 통합된 행정 서비스 추진

○ 각 회원국은 산업 제조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단일 창구를 설치하고, '유럽 비즈니스 지갑(EBW*)' 도입

* European Business Wallet : EU 내 기업이 디지털 신원(법인 ID), 증명서, 서명 등을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국경 간 거래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eIDAS 2.0 기반의 디지털 지갑

- 산업 제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 신청서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절차 마련 및 국가 차원의 단일 접수창구 설치
- 유럽 비즈니스 지갑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EBW를 통한 서류 제출 단일화, 데이터 재사용,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인허가 투명성과 보안 강화

○ 모든 개별 허가를 통합한 '단일 신청(1개 프로젝트당 1회 제출)', '단일 허가' 체계를 구축하며, 프로젝트별 인허가 신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서류 완비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추가 서류 요청은 최대 2회로 제한

9) IAA Proposal establishing measures for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제2장 참조

- 프로젝트 허가 신청 접수 45일 이내에 허가 요건 완비 또는 미비를 고지해야 하며 누락된 정보 제출(1회) 후에도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보완 요청 가능(2회)

※ 첫 번째 추가 정보 요청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 가능

○ 탄소중립산업법 상 신속 인허가 대상인 탄소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집약 산업 탈탄소 프로젝트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략적 산업 프로젝트로서 신속 환경 영향 평가(Regulation on speeding-up environmental assessment) 등 우선적으로 행정 지원

(공공부문을 활용한 수요 창출[10]) 공공 조달 및 지원 시, 에너지 집약형 제품(건물, 인프라 및 승용차에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콘크리트·모르타르 제품 및 가공품), 전기차, 넷제로 기술의 유럽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 적용

○ 상호 조달 접근권(reciprocal procurement access)이 없는 역외 기업에 의해 조달되는 제품은 공공 조달 참여 불가

- 철강 제품은 최소 저탄소 함량 요건이 적용되며, 2026년 7월부터 무관세 철강 쿼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쿼터 초과 수입분은 50% 관세 부과 전망

〈 제품 유형에 따른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 〉

제품	공공 조달 및 지원 요건
철강	• 공공 조달 제품 및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총량의 25% 이상 저탄소 제품
콘크리트·모르타르	• 사용되는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총량(생산에 사용된 클링커 및 시멘트 포함) 중 5% 이상이 유럽 원산지 및 저탄소 제품
알루미늄	• 사용되는 알루미늄 총량의 25% 이상이 유럽 원산지 및 저탄소 제품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부속서 ('26.3, EU 집행위원회)

- 철강, 콘크리트,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저탄소 요건은 EU 건설자재 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 또는 환경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에 따른 위임 규정(delegated acts) 외, IAA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

* IAA 제안('26.3 기준)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산업재 탄소 배출량(GHG intensity) 등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급 기준은 역내산의 경우 기존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를, 수입산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기반으로 산출

10) IAA Proposal establishing measures for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제3장 참조

- 'Made in EU' 요건이 강화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공공 조달, 기업용 차량 지원, 소형 무공해 차량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원산지 요건 적용

* 신형 전기차(new pure electric vehicles, PEV),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전기차(off-vehicle chargin hybrid electric vehicles, OVC-HEV), 연료전지 전기차(fuel cell vehicles, FCV) 등

〈 자동차 유형에 따른 원산지 요건 〉

유형	인정 요건(가격은 총 공장인도가 기준)
전기차 공공 조달	• 기본 요건(IAA 발효 6개월 후) -(조립) EU 역내 최종 조립 필수 -(부품) 배터리 제외 총 부품 가격 중 70% 이상 유럽산 -(배터리) 셀 포함 핵심 부품 3개 이상 유럽산 • 강화 요건(IAA 발효 3년 후) -(배터리) 셀, 양극재(CAM), BMS를 포함, 5개 이상 유럽산 -(구동장치) 총 부품 가격의 50% 이상 유럽산(구동장치-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시스템) 전장 시스템 총 가격 중 50% 이상 유럽산 ※유예 조항 : 기등록 차량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으로 간주
기업용 차량 지원	• (지원) 원산지 요건 충족 차량에 한해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혜택 부여 • (부품) 배터리를 제외한 총 부품 가격의 70% 이상 유럽산 • (배터리) 핵심 부품 3개(발효 6개월 내) 및 5개(발효 3년 후)이상 유럽산 • (구동장치 및 시스템) 총 가격의 50% 이상 유럽산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부속서 ('26.3, EU 집행위원회)

- 유럽 원산지(역내 생산으로 표기 가능) 요건은 유럽경제지역*, 유럽과 관세 동맹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및 공공 조달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을 포괄하고 있어 현 제안에 담긴 'Made in EU'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11]

* European Economic Area (EEA), EU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유럽 원산지 요건 적용 〉

- 원산지 국가는 지배 구조상 국가가 아닌 유럽 관세법(Union Customs Code) 원산지 규정에 따르며, 공급망 보안 위협 등의 경우 유럽 원산지 및 역내 생산에서 배제
- IAA 현재 제안의 원산지 및 'Made in EU' 정의에 대해 회원국(프·독 등)간 이견이 있으며, 실제 시행까지는 1년 이상 소요 전망(공공 조달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
- 넷제로 기술에 대해서도 유럽 원산지 요건이 적용,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육·해상 풍력, 원자력(핵분열) 적용되나, 개별 기술에 따라 차등 적용
- 공공 조달 재생에너지(배터리·태양광·수전해조·육해상 풍력 등)에도 적용 예정

11) Proposed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Aims to Shore Up Declining EU Manufacturing Sector (Crowell & Moring LLP Client Alert, https://www.crowell.com/), (검색일: 2026.3.17) 참조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요건 강화[12]) 신성장 전략적 제조 분야(emerging strategic manufacturing sectors) 중심으로 유럽 내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 강화

-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핵심 원자재 채굴·가공·재활용 등 신성장 제조 분야에서 역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사전 승인 요구
  - (예시) 역외 기업이 1억 유로 이상을 역내 투자할 경우,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중국 등) 기업일 경우는 투자 대상국 승인* 필요
    * 제4장 제17조에서 심사 분야를 ① 배터리 기술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② 전기차,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연료전지 전기차(전동화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품 포함), ③ 태양광 발전(PV) 기술, ④ 핵심 원자재 채굴, 가공 및 재활용으로 명시
- 회원국별 외국인 투자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역외 기업의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등 투자 심사 강화
  - 역내 기업 및 자산에 대한 지분(소유권) 제한, 합작(Joint Venture) 투자 의무화, IP 라이선스 및 노하우 제공, 역내 R&D 투자, 원자재 역내 조달,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EU 근로자로 고용 등 광범위한 요건 심사
  -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
    ※ 방산, AI, 핵심 원자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제3국 투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투자 심의가 강화되었으며, 세부 절차와 규정은 아직 구체화 단계

〈 부가가치형 외국인 직접 투자* 승인 기준 〉

- IAA 발효 12개월 후 아래 6가지 요건 중 4가지 이상 충족 시 승인
  - 투자 대상 자본금, 의결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소유권의 49% 이하를 취득, 보유 또는 행사할 경우
  - 1개 이상의 역내 법인과 합작 투자를 통해 자본금, 의결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을 49% 이하 보유
  - 역내 투자 대상과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 대상(역내 기업 및 자산)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 수행 내용을 반드시 포함*
    * FDI 이전 또는 FDI 협력 없이 개발된 지식재산권 및 자산은 투자 대상이 독점적 소유
  - R&D 비용으로 매년 투자대상의 연간 총매출액의 최소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지출
  - 투자 시행부터 운영 기간 내 지속적으로,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인력의 최소 50%는 운영, 기술, 감독 및 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직군에서 EU 근로자로 구성
    * 고용과 함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함
  - 공공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동안 역내 고용 규모 유지
  - 원자재 등 필요한 투입재의 역내 조달 전략을 수립하여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 및 역내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투입재의 최소 30% 역내 조달

* Value-added FDI : 자본의 단순한 투입이 아닌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FDI 의미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26.3, EU 집행위원회)

12) IAA Proposal establishing measures for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제4장 참조

○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요건 강화를 위해 신흥 전략 분야를 보완(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부여[13)]

- 신흥 전략분야를 추가할 경우, 개별법* 적용을 받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양자 및 반도체를 제외하고 탄소중립산업법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기술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 EU 반도체법(Chips Act), EU 인공지능법(EU AI Act), 디지털 시장법(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 신흥 전략분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 기술들 〉

구분	기술 목록
탄소중립	• 육상 풍력 및 해상 풍력 재생 기술, 열펌프와 지열 에너지 기술, 전기분해 장치 및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운송용 전기 충전 기술과 그리드 디지털화 기술을 포함한 전력망 기술 • 수력발전 기술, 비생물학계 재생가능 연료 • 이전 범주에서 다루지 아니한 탈탄소화를 위한 변혁적 산업 기술 및원자력 기술
원자력	• 핵연료주기 기술을 포함한 핵분열 에너지 기술
운송	• 운송용 풍력 추진 및 전기 추진 기술

출처 : Net-Zero Industry Act ('23.3, EU 집행위원회)

(산업 가속화 지역 지정[14)]) 회원국별 1개 이상의 '산업 가속화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통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집약 산업 탈탄소 제조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회원국별 1개 이상의 산업 제조 가속화 지역 지정을 통해 산업 제조 프로젝트 집적화 및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략 프로젝트 및 기타 이니셔티브(Net-Zero Acceleration Valley* 등)와 연계

* 넷제로 기술(SMR,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 제조, 생산을 촉진하는 집중 특화 구역

○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가속화 지역 내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및 연구 투자 촉진

- 3년 단위로 가속화 지역 내 에너지 수요 분석 실시, 가속화 지역 내 양질의 고용 창출 및 대규모 및 지역 간 기술 파트너십 구축
- 가속화 지역 내의 산업 활동을 허가하는 일괄 기본 허가(aggregated baseline permit*)를 3년 단위로 작성하고 발급

* 개별로 받던 허가(환경, 소방, 토지 등)를 하나로 묶은 일괄 기본 허가(Baseline Permit) 위에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허가(특수 설비 등)만 추가

13) IAA Proposal establishing measures for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14) IAA Proposal establishing measures for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제5장 참조

- 산업 제조 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묵시적 승인(Tacit approval) 제도* 도입

  *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거절이 아니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전력망, 용수, 가스 등 산업 인프라 수요 발생 시, 산업 가속화 지역 내 요청을 최우선 처리

3 유럽 산업가속화법(IAA)의 산업정책적 시사점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제조 경쟁력 재건'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에서의 탈탄소 및 'Made in EU'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안

* 에너지 집약형 산업 및 청정 제조 산업(배터리, 태양광, 자동차 등)

○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에서 지적한 유럽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책 수단으로 상당수 반영[15]

*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마리오 드라기(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EU 집행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산업정책 보고서로 383개 정책 권고안 수록

- 드라기는 유럽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점진적인 쇠락(slow agony)'으로 규정, 지난 20년간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제 성장과 혁신을 따라잡기 위한 파격적 산업 촉진 정책안 다수 제시

〈 드라기 보고서 주요 내용 〉

유럽 경쟁력 진단	산업정책 방향 제시
• 미국에 혁신 기술 주도권 상실 • 러시아산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제조 경쟁력 저하 • 자유무역 모델 한계 봉착	• 기후변화 대응을 규제가 아닌 산업육성의 기회가 되도록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결합** • 첨단기술에 대한 **민간·공공 협력 투자** • 매년 7,500~8,000억 유로**(EU GDP 약 5%) 지속적 투자** 등 380개 이상 혁신안 제안(Draghi Plan으로 명명)

출처 : 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24.9, EU 집행위원회)

- EPIC*는 '24.9월 이후 1년간 혁신안 이행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11.2% 수준**에 멈춰 경제의 판을 바꿀 '게임체인저'급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반해, 동 기간 미국은 유럽보다 8배나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

  * European Policy Innovation Council (유럽정책혁신위원회) : 유럽 내 드라기 보고서 이행과 유럽 규제 환경을 분석하는 싱크탱크로, Draghi Implementation Index(개혁안들이 실제 EU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추적), 'Made in EU' 비율 및 허가 절차 단축 등 행정 효율성 지표 작성

  ** 완료(11.2%, 43건), 부분 이행(20.1%, 77건), 추진(46%, 176건), 미이행(22.7%, 87건)[16]

15) Impact assessment report for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참조

- 각 회원국이 자국의 특수성과 규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국가 이기주의에 따른 자본 및 서비스 시장의 파편화, 복잡한 행정 절차 및 투자 부족 등을 원인으로, 유럽의 기존 성장 모델이 사라지고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17)]

※ 드라기는 EU 연합(Confederation)체제로는 미·중 사이에서 생존이 어려워, 국방·산업정책·외교를 하나로 모으는 '실용적 연방주의(pragmatic federalism)' 전환 강조

특히, 에너지 집약형 산업과 청정기술 제조 분야에서 탈탄소 가속화 및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원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구체화시켜 입법화하는데 주력

- **(유럽산 저탄소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족 문제)** 저탄소에 대한 통일된 표준, 라벨링 및 정의 부재, 체계적이고 통합된 탄소 회계 방법론 부재 및 저탄소 소재와 제품 도입을 지원하는 공공 조달 관행 문제

- **(에너지 집약산업과 청정기술 제조의 취약한 산업 밸류체인 문제)** 철강, 화학,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에서 중국 대비 낮은 생산성과 고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발표된 탈탄소화 프로젝트가 투자에 이르지 못한 채 정체

※ (철강산업 예시) 2018년 이후 진행된 약 250개 유럽 탈탄소화 프로젝트 중 약 68%는 아직 발표 또는 구상 단계

  -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조건과 인센티브를 앞세워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 유럽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

- **(산업 탈탄소화 기술이 대규모로 도입되기 어려운 한계)**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길고 분절적이며 불확실한 허가 절차, 전력망 등 산업기반시설 부족 및 자금 확보의 어려움

16) Europe drags its heels on Draghi plan as global rivals surge ('25.9.10, https://www.ft.com) 기사 원문 참조

17) EU economy falls behind global rivals due to 'complacency', warns Mario Draghi ('25.9.16, https://www.ft.com), Mario Draghi calls for EU 'federation' to avoid being 'picked off' by US and China ('26.2.2, https://www.ft.com) 기사 원문 참조

〈 정책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목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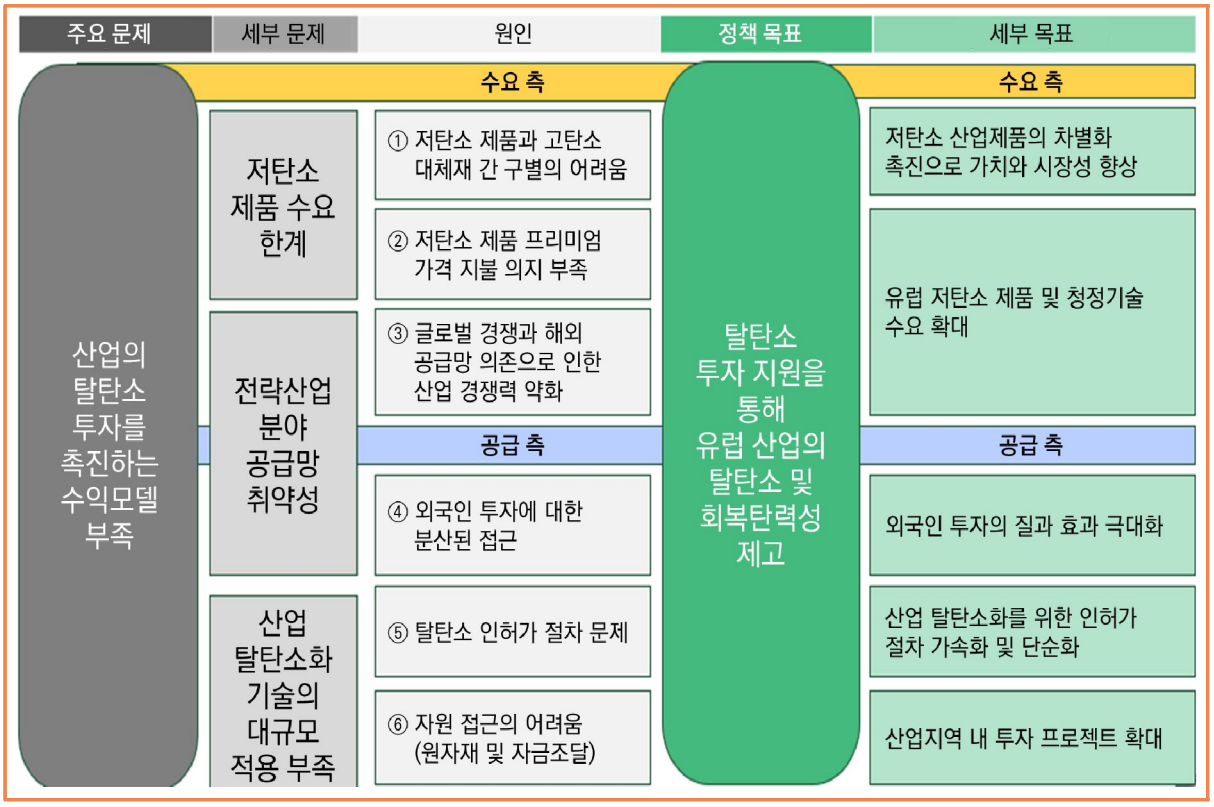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영향 평가 보고서 ('26.3, EU 집행위원회)

정책 대안은 정책당국의 개입 정도에 따라 '낮은 수준의 개입(Low, PO1)'부터 '높은 수준의 개입(High, PO3)'까지 3단계*로 구성

* Low/High degree of intervention (개입 정도) :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로, 현상유지(Baseline), 자율규제(PO1), 부분강제(PO2), 전면강제(PO3)

- **(인허가 및 저탄소 라벨링)** 정책 대안이 올라갈수록(PO1→PO3), 기업이나 회원국에 부과되는 요건의 강제성이 높고 구체화
-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대안이 높아질수록 해당 조치들이 구속력(Binding)을 갖게 되며, 엄격히 적용
- **(시장 범위)** 정책 대안이 높아질수록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시장 범위 확대.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공공 조달' 시장에만 적용되던 '저탄소' 또는 'Made in EU' 요건이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 적용

〈 정책 목표별 정책 대안 설계 〉

세부 정책목표	정책 대안		
	LOW(PO1)	MIDDLE(PO2)	HIGH(PO3)
저탄소 산업 제품의 차별화 촉진으로 가치와 시장성 향상	모든 에너지집약산업용 저탄소 제품 라벨 개발	철강 저탄소 제품 라벨 개발	

세부 정책목표		정책 대안		
		LOW(PO1)	MIDDLE(PO2)	HIGH(PO3)
유럽 저탄소 제품 및 청정기술 수요 확대	에너지 집약형 산업	공공 조달 및 일부 다운스트림 산업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저탄소 요건 적용	공공 조달/지원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저탄소 및 'Made in EU' 요건 적용	일부 다운스트림 산업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해 저탄소 및 'Made in EU' 요구
	배터리	공공 조달, 경매, 공공지원제도에서 배터리 'Made in EU' 요구		시장에 공급되는 배터리에 'Made in EU' 요구
	태양광 PV	공공 조달, 경매, 공공지원제도에서 태양광 PV 시스템 'Made in EU' 요구		시장에 공급되는 태양광 PV 시스템에 'Made in EU' 요구
	차량 부품	공공 조달 및 지원제도에서 차량 부품 'Made in EU' 요구		시장에 공급되는 차량 부품에 'Made in EU' 요구
외국인 투자의 질과 효과 극대화		자발적 FDI 가이드라인	EU 전반에 적용되는 의무적 FDI 조건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가속화 및 단순화		One project one digital procedure (프로젝트별 단일 디지털 인허가 절차)	에너지 집약형 산업 중심 단일 디지털 인허가 절차	산업 제조 클러스터 대상 추가 조치
산업가속화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 확대		산업가속화 지역 프로젝트 공공 자금 지원 촉진 권고	회원국별 산업가속화 지역 지정 및 공공 자금 접근성 확대	

출처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영향 평가 보고서 ('26.3, EU 집행위원회)

- IAA를 포함하여,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EU 인공지능법(EU AI Act), 디지털 시장법(DMA)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일련의 전략산업 입법은 유럽식 '자국 중심주의' 산업정책의 본격화를 의미
  - 과거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던 유럽이 미국의 IRA처럼 '현지 생산 조건'과 '보조금 결합형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가미된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의미
  -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조립생산에 이르기까지 유럽 내에서 완결된 '제조 가치사슬(Manufacturing Value Chain)' 확보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탈탄소 기반 유럽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추구하는 강력한 의지 반영
  - 탄소 감축을 단순한 비용이나 규제로 보지 않고, '저탄소 라벨링'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 확립을 통해 유럽산 제품의 프리미엄 가치 창출 및 탈탄소화가 산업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 지향
  - IAA가 예고한 'Made in EU' 및 외국인 직접 투자 등 강화되는 요건은 **우리나라 유럽 수출기업의 현지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변화하는 **유럽 원산지 기준 등과 투자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필요**